



#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 및 시사점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이병철 분석관

## 개인금융채무 장기연체자와 부실채권액이 지속 증가

-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기조와 내수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금융채무 연체자, 금융회사 부실채권액은 지속 증가 추세**
  - 가계부채는 2018년 1,537조 원에서 2025년 1,979조 원으로 증가했고, 가계부채 연체율은 2018년 0.78%에서 2025년 0.93%로 악화
  - 이에 따라 2025년 장기 연체자(90일 이상)는 93.6만 명에 달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 인원은 2018년 9.3만명에서 2025년 18.9만명으로 증가

- **장기 연체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기계적인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과 건전성 중심의 채권 보유보다 적극적인 조정·정리가 필요**
  - 정부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2017.3.) 등에서 공공기관의 회수 가능성 없는 부실채권은 적기에 상각<sup>1)</sup>하고, 상각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캠프에 매각하여 채무자 재기 지원과 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

##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분석 필요

- **이에 주요 공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sup>2)</sup> 조정·정리 현황과 연체 채무자의 채무 조정 지원 실태를 분석하여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의 개선 방안을 검토**
  - 분석대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채권금융회사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공공기관 등 12개 공공기관<sup>3)</sup>의 개인금융부실채권의 보유 현황과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

[표 1]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 분석 대상 공공기관

분석대상 공공기관	비고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제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2호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관
한국장학재단, 근로복지공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없어 대손상각(회계상 손실처리)된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2) 본 보고서의 개인금융부실채권은 채무자로부터 개인금융채권의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  
 3) 분석대상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13개 공공기관 중 은행법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제외하고,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해 총 12개 기관이다. 대부분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등으로 정책자금용자, 보증부대출, 학자금대출 등의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자 상환이 이행되지 않아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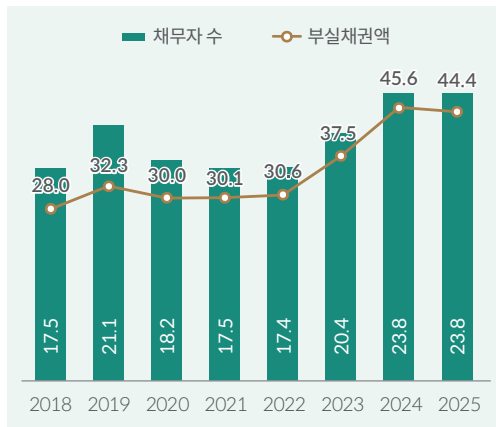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보유 현황

▪ 분석 대상 공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 규모는 2018년 28조 원에서 2025년 44.4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3천만원 미만<sup>4)</sup> 부실채권이 대부분을 차지

- 최근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증가는 코로나19 당시 지원된 정부의 정책자금용자와 보증 대출의 상환시점 도래, 고금리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
- 금융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회수가가능성 없는 부실채권을 적시에 상각 후 소각 또는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만, 주요 공공기관의 상각채권 비중은 2018년 23.3%에서 2025년 16.6%로 감소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조정·정리가 필요

[그림 1] 개인금융부실채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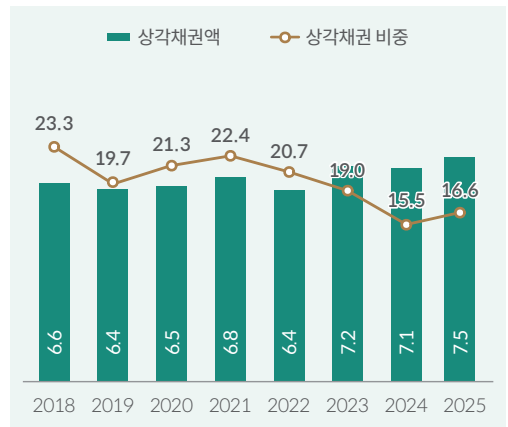
(단위: 십만명, 조 원)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2] 유형별 개인금융부실채권 현황

(단위: 조 원, %)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표 2] 공공기관별 개인금융부실채권 현황(2025년말 기준)

(단위: 명(건), 억 원, %)

구분	전체		3천만 원 미만		채무자 비중 (C/A)	채권액 비중 (D/B)
	채무자 수(A)	채권액(B)	채무자 수(C)	채권액(D)		
기술보증기금	7,336	10,175	449	617	6.1	6.1
한국무역보험공사	3,908	19,730	251	39	6.4	0.2
서민금융진흥원	948,364	43,391	948,364	43,391	100.0	10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51,859	31,371	240,592	25,141	95.5	80.1
신용보증기금	65,515	28,948	56,808	10,906	86.7	37.7
주택도시보증공사	22,836	101,843	2,299	689	10.1	0.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69	5,088	26	3	0.5	0.1
지역신용보증재단	330,169	71,239	322,812	49,174	97.8	69.0
한국자산관리공사	572,690	104,774	505,218	37,558	88.2	35.8
한국주택금융공사	50,912	21,630	16,143	2,026	31.7	9.4
한국장학재단	72,893	4,314	72,889	4,312	100.0	100.0
근로복지공단	51,762	1,938	51,762	1,938	100.0	100.0
합계	2,383,513	444,451	2,217,613	175,794	93.0	39.6

주: 1. 부실채권은 개인금융채무자(가계, 개인사업자) 기준이며, 3천만 원 미만 부실채권은 3천만 원 미만 부실채권(원장)을 한 개 이상 보유한 채권자와 채권액 합계를 의미

2.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채무자가 아닌 계좌 수 기준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사회계 기준(담보채권 제외)이며,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관리채권은 제외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4) 개인채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원금 3천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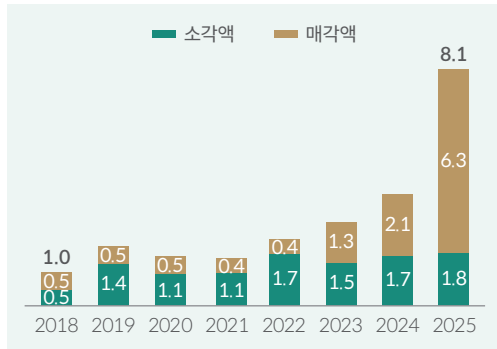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소각·매각 현황

▪ 공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 소각·매각<sup>5)</sup> 규모는 2018년 1.0조 원에서 2025년 8.1조 원으로 증가했으나, 5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11.8조 원을 보유

- 2025년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소각액은 1.8조 원, 매각액은 2025년 6.3조 원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했지만, 이는 2022년 새출발기금, 2025년 새도약기금<sup>6)</sup>의 출범에 따라 공공기관이 개인금융부실채권을 다량 매각한 데 기인함
- 정부가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회수 가능성 없는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소각·매각 강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5년~10년 미만 부실채권은 5.8조 원(13.0%)이며, 특히 10년 이상 부실채권은 6.2조 원(13.9%) 규모로 조사됨

[그림 3] 개인금융부실채권 소각·매각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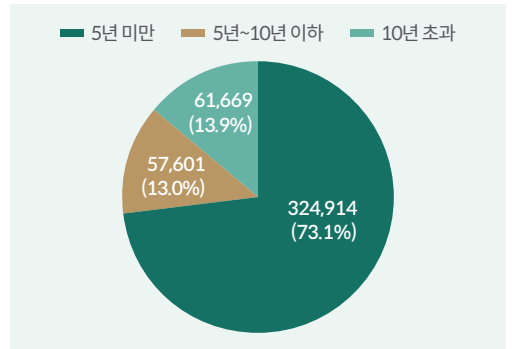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4] 연체기간별 개인금융부실채권액 현황

(단위: 억 원)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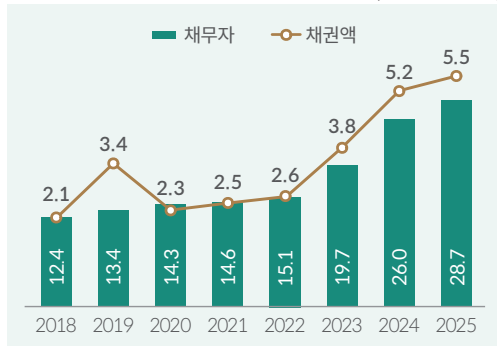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채무조정 현황

▪ 공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에 대한 전체 채무조정 지원 실적은 2018년 12.4만명, 2.1조 원 규모에서 2025년 28.7만명, 5.5조 원 규모로 증가 추세

- 공공기관은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개인금융부실채권에 대한 자체적인 대내 채무조정 또는 신용회복위원회<sup>7)</sup> 등의 대외 채무조정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
- 공공기관 자체 채무조정 비중은 2018년 45.7%에서 2025년 34.6%로 감소

[그림 5] 개인금융부실채권 채무조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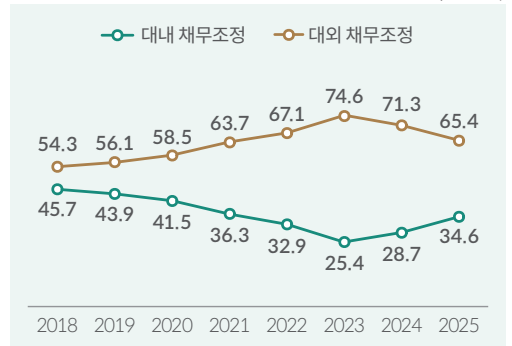
(단위: 만명, 조 원)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6] 유형별 개인금융부실채권 채무조정 비중

(단위: %)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5) 공공기관은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부실채권은 상각처리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하거나, 기관별 내부 규정에 부합한 경우 소각하고 있다.

6)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채무자의 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7)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시사점

▪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상각 및 소각·매각 등 적극적인 조정·정리를 촉진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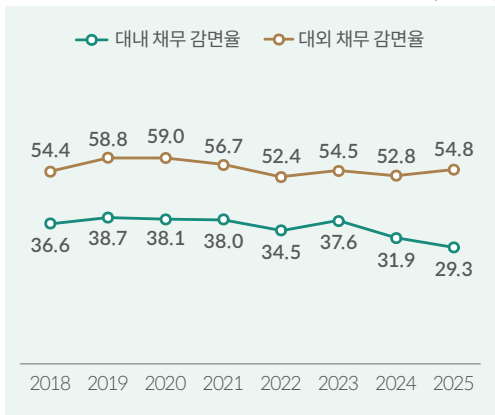
- 2017년 금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강화 방향과 다르게 공공기관의 장기 연체 개인금융부실채권 보유 규모는 2018년 이후 지속 증가
- 코로나19 이후 채무자의 상환여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지만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개인 금융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sup>8)</sup>에 한하여 협소한 측면이 있음
- 한편, 개인금융부실채권에 대한 소각을 위한 내부 규정이 부재한 공공기관도 있어 금융위원회는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조정·정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공기관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자체 채무조정체계를 내실화하여 채무자의 장기 연체를 방지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에 노력할 필요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024.10.17.)으로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으나, 공공기관은 자체 채무조정 지원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대외 채무조정에 의존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감면율<sup>9)</sup>이 대외 채무조정보다 낮았고, 채무조정 실효율<sup>10)</sup>은 더 높게 나타나 공공기관 특성에 맞춘 자체 채무조정체계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필요

[그림 7] 공공기관 채무조정 채무감면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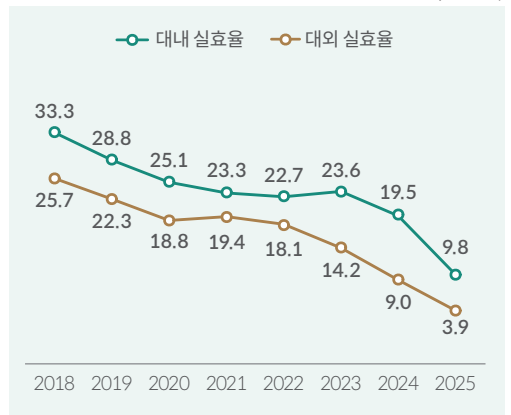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8] 공공기관 채무조정 실효율 현황

(단위: %)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8) 법원의 개인파산 등 면책결정, 채무조정 이행 완료, 채무자 사망, 소송 등으로 채권이 무효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이다.  
 9) 주요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르면 자체 채무조정의 채무원금 감면율이 25%~80% 범위에 분포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은 90%까지 감면할 수 있다.  
 10) 채무조정 실효(失效)란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채무조정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의 실효율은 채무조정체결 연도 기준으로 '실효건수/채무조정체결 건수'로 산정한다. (예시: 2018년 채무조정 체결 후 2025년 실효되는 경우 2018년 실효건수에 포함)